

	<h1>보도자료</h1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미래창조 금융</li> <li>· 따뜻한 금융</li> <li>· 튼튼한 금융</li> </ul>
	<h2>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</h2>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투자금융연금팀		
책임자	박주영 팀장(02-2156-9790)	담당자	김영대 사무관(02-2156-9798)
배포일	2016. 1. 5.(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3매

**제 목 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**  
**-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따른 발행기업 범위,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규정**

**1. 개요**

- '16.1.5일 국무회의에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이하 '자본시장법') 시행령」 개정안 통과
- 「자본시장법」 개정(15.7.6일)을 통해 '증권형'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,
- 동법 시행령에서는 **발행기업의 범위, 구체적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등**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(16.1.25 시행)

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▶

- (추진경과)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(15.7.6) →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(15.7.23~9.1) → 규제위·법제처 심사 → 차관·국무회의
- (주요내용)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'증권형' 크라우드펀딩 도입
  - 자본시장법에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
  -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투자자 보호 양 측면을 고려
- 중개업자의 진입규제 및 증권발행 부담은 완화하되, 투자한도 및 전매제한 등 엄정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

**2. 주요 내용**

①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발행기업의 범위

- ① **업력 7년 이하의 창업·중소기업과**
  - \* 주권상장법인과 일부업종(금융·보험업, 골프장, 잭블링 등)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준하여 제외
- ② **벤처기업·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·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\***을 하는 경우에는 **업력에 관계없이(7년 초과도) 이용**할 수 있게 함
  - \* 비상장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

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요건

- ① **자기자본 요건 : 5억원**
  - \* 법에서는 5억원 이상으로 위임 → 진입규제 완화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규정
- ② **대주주요건, 이해상충 방지체계** 등은 투자자문업·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하고, **사업계획·설비요건도** 일부 완화
  - \* 사업계획 : 질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은 제외(수지전망 타당성·실현가능성)
  - \*\* 인적·물적설비 : 인력요건을 일부 완화(주요 직무종사자 요건 등 배제)

③ 투자자 보호 장치 등 마련

- ① **발행기업의 발행한도** : 기업당 **연간 7억원까지**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 가능
- ② **투자자별 투자한도** : 발행기업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초기 창업·중소기업인점을 감안하여, **투자자의 전문성·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**하고,
  - **투자한도의 제한이 없는 '전문투자자 등'**의 범위를 확대
  - \*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(금융회사 등)에 더하여 **전문성·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를 추가로 규정**(투자전문가, 개별법상 펀드, 적격·전문엔젤투자자 등)

구분	연간 동일기업당 투자한도	연간 총 투자한도
일반투자자	200만원	500만원
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(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)	1,000만원	2,000만원
전문투자자 등	없음	없음

③ 투자자 전매제한의 예외 : 발행기업·대주주 및 전문투자자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하고 있는 자에게는 법상 전매제한 기간(1년)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

4 기타 사항 :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발행방법 구체화

- 발행기업이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(또는 어플리케이션)에 게재한 사항에 관하여 기업과 투자자, 투자자 상호간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에 발행하도록 규정

3. 향후 계획

□ 개정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은 '16.1.25일부터 시행 예정

- 하위 감독규정(금융투자업규정,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)도 증선위·금융위 의결을 거쳐 공포('16.1.13일)될 예정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